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75
----------	-----

2022년 12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박상혁 의원(찬성의원 29명)
- 나. 제안일 : 2022년 10월 17일
- 다. 회부일 : 2022년 10월 21일
- 라. 상정일 :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12월 1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상혁 의원)

가. 제안이유

- 동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2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었음.

- 그러나 본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자치구 단위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마중물 차원에서 지난 10년간 서울시에서 지원을 지속하여 왔으나,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 및 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각종 비효율이 드러나고 있는 바, 동 조례를 폐지하여 서울시 주도의 획일적 지원이 아닌,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2. 10. 27. ~ 10. 31.) 결과

※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총 1,16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모두 조례안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임.

※ 입법예고 결과 외에 2022.12.1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반대 10,584명, 179개 단체 서명분이 시민권익담당관을 통해 접수되었음.

입법예고결과 주요 의견요약서	
조 문 (폐지 조례안)	주요 의견 (모두 반대의견으로 찬성의견 없음)
폐지 조례 배경 (제안이유)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자치구에만 떠맡길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력하여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업임.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등의 문제는 해결하고 개선할 사항이지 그것을 빌미로 사업 자체를 폐지하려는 것은 부당하며 조례 폐지 철회를 요구함.

- 마을공동체 활동이 마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다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더더욱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함. **조례 폐지는 마을을 침체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임.**
-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은, **소외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속되어야 함.**
-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의 생활권, 사회권, 참여권에 연결되는 사회적 자원이자 공동유산이라고** 생각함.
운영상 특정단체 지원, 보조금사용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 운영관리 단계에서 해당 단체에 대한 부분을 뜯어고치고 바로 세워 제대로 기능하게 함을 우선 고려해야지, 어떤 단체인지, 어떤 마을 모임인지 구분없이 **잘하고 있는 곳까지 무분별하게 모든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자체를 없애는 것은 잘못된 정책과정이라고** 생각함.
- 점차 자본중심의 개인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는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각 지역마다 처한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 자체에만 맡긴다면 마을 공동체 활성화마저도 양극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컨텐츠는 지역 주도로 맡기되, 예산 등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마을에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대의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쳐주는 작은 규모의 직접민주주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함. **마을공동체는 대의민주주의, 큰 정치가 살필 수 없는 시민들의 일상적 문제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임.**
- 하나의 큰 조례안이 아닌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 식의 방안이 더 큰 **부조리와 단절을 야기할 것임.**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의견 >

- 조례안의 폐지와 관련해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본 법인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았고,**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을 위한 논의도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음.
- 특정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명분을 지속해서 내세우고 있으나, 2021년 11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수탁 기관이 **본 법인으로 교체된 사실을 무시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의 폐지 여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되어야 하며, 관련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안정 문제 등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있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
- 위와 같은 이유로 본 법인은 관련 조례 폐지에 적극 반대함.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문 >

서울시 마을공동체 조례 폐지 반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조례폐지안’을 철회하라!!”

시민의 보편적 가치이자 권리, 마을공동체 활동

지난 2022년 10월 27일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서울시 마을공동체조례 폐지안')이 국민의힘 박상혁의원 발의, 2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에 따라 입법예고 되었다.

서울시마을공동체조례는 서울시민의 뜻에 따라 2012년 3월에 제정되어 10년간 서울시민의 마을공동체활동을 지원하는 근거였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는 지난 10년간 1만여 건에 이르는 사업을 통해 13만 명 이상의 서울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단순 친목활동, 여가생활을 넘어 내가 사는 마을 안에서 '함께 돌봄'과 '함께 성장'을 실천하며 모두에게 안전한 마을, 누구나 존중받는 마을, 이웃과 함께 오래도록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왔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에 영향을 미쳐, 전국적인 마을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를 선도한 서울시민의 자부심이었다. 마을공동체 정책은 10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제 마을공동체 활동은 시민의 보편적 가치이자 권리이며, 지방정부가 마땅히 지향하고 지원해야 하는 시민 활동이 되었다.

마을공동체 조례폐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

폐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박상혁 의원은 서울시마을공동체조례 폐지에 대한 사유를 크게 2가지로 밝혔지만, 마땅한 근거나 논리가 없다.

조례폐지 사유는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 및 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각종 비효율이 드러나고 있다”와 “서울시 주도의 획일적 지원이 아닌,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례폐지 사유에서 밝힌 사업과정에서 특정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과 논란은 그 실체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폄하하기 위한 정파적 언술일 뿐이다. 마을공동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면 될 일이지 조례를 폐지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조례폐지로 자치구 주도의 마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다. 실제 서울시민들은 이미 자치구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 다양한 마을공동체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례와 성과를 축적해왔다. 오히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정책사업 축소에 따라 자치구 마을공동체 정책이 영향 받으며 위축되고 있다. 2021년

까지 24개 자치구 마을센터가 운영되었는데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축소하자 2022년 12월 현재, 17개의 자치구 마을센터만 운영되고 있고, 23년에는 7개 자치구 센터만 남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정책 중단이 자치구의 마을자치사업의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 현실이 이와 같은데 조례폐지의 근거로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 추진을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마을공동체 10년 성과의 당사자인 시민을 배제한 폐지발의

지난 코로나 시기 마을공동체의 필요성은 다시금 대두되었다. 팬데믹의 시대에 시민의 고립과 단절에 대한 우려는 커졌지만, 시민들은 마을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해나갔다. 코로나 국면 때 마을공동체는 스스로 마스크를 만들어 마스크 대란에서 이웃을 지켰다.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겐 직접 방역물품과 도시락 배달을 하였다. 직접 만나지 못하여도 온라인 모임을 하면서 우울과 고립감을 헤쳐 나갔다.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마을의 크고 작은 가게의 방역을 도맡았다. 주민자치회는 예산과 행정지원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를 열어 지역 주민 소통과 동네 문제해결에 앞장섰다. 이미 시민들은 다양하고 자발적인 마을공동체활동으로 국가적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과 긴밀히 협력하는 자치력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공동체와의 협력과 적극적 역할 배분 및 지원을 강조하는 추세임을 볼 때, 시민의 활동성과를 무시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정치 공세일 뿐이다. 정책상의 문제가 있다면 시민 당사자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조례폐지 상정에 앞서 시민공청회, 포럼, 컨퍼런스 등과 같은 시민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 조례의 주인인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독단으로 조례 폐기를 상정한다면 이는 천만 서울시민을 무시하는 반 민주주의적 행태이다.

우리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조례폐지안' 에 대한 시민의견을 경청하라!!
- 하나, 서울시의회는 부당한 논리로 제시된 '서울시 마을공동체조례 폐지안'을 당장 철회하라!
- 하나,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마을공동체활동을 보장하고 지속 지원을 위한 노력을 다하라!

서울시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폐지반대시민운동본부는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1,145명의 시민과 1만의 반대 서명운동을 해주신 시민의 뜻을 모아 오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조례 폐지 반대'의 의지를 밝힌다.

2022년 12월 13일(화)

서울시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폐지반대시민운동본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폐지 조례안은 2012년 3월 15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당시 조례명: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며,
- 2020년 7월 16일 전부개정을 통해 명칭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동 조례 제12조(지원범위)에서 적시한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자원을 이용한 공동체 기반 경제 활동 지원,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 왔음.

〈마을공동체 사업 개요〉

1.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요

- 센터 업무 개시일 : 2012. 8. 23.(사단법인 마을 최초 수탁)
- 운영방식 : 민간위탁(예산지원형, 사무형)
- 수탁기관 :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 위탁기간 : 2021.11.21.~ 2022.12.31. (약 1년 2월)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3층(753.13㎡)

- 조직 및 인력 : 1국 5팀 정원 30명 ('22.9월 기준 현원 27명)

【 2016~2022년 연도별 인력현황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57명	59명	57명	58명	50명	42명	30명
정 원	27명	29명	29명	30명	30명	30명	30명
비정원	30명	30명	28명	28명	20명	12명	0명

- '22년 민간위탁금 : 2,810백만원

- 인건비 1,783백만원, 운영비 305백만원, 사업비 717백만원, 일반관리비 5백만원

- 위탁사무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실행 지원,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관리
-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 강화,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2. 자치구 마을생태계(중간지원조직) 지원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
- 지원대상 : 24개 자치구 ※ 중구 :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미추진
- 지원규모 : 3,120백만원(구별 130백만원) *중간지원조직 형태 구분 없이 균등 교부
- 추진체계 : 시 → 구 → 자치구마을센터로 예산교부
- 사업내용 : 자치구 공모사업 및 기반조성사업 추진
 - 공모사업 : 3인 이상 주민모임, 지역단체 등 참여로 지역문제 해결
 - ※ 기존 단체 위주 참여방식 → 참여시민 모집 통한 사업실행단 구성·운영방식으로 전환
 - 기반조성사업 : 공동체 활성화 촉진을 위한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추진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 현황 (24개구)

(‘22. 10. 20. 기준)

구 분	직영	민간위탁
개수	7개구	17개구
해당구	서대문구, 양천구, 동대문구, 강서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그 외

자치구 마을센터 주요기능

구 분	내 용
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및 지원	- 직접지원: 실시계획, 사업설명회, 심사 및 선정, 보조금 지급, 회계정산 및 결과보고서 취합 - 간접지원: 선정자교육, 상담 및 컨설팅, 모니터링, 회계지원
② 마을지원활동가 관리·지원	- 마을지원활동가 선발, 활동교육 및 성장지원 - 일반마을상담, 공모사업상담 및 모니터링, 컨설팅, 교육연계
③ 교육·연구	- 대상별교육: 공무원, 주민, 마을사업지기선정자, 마을활동가, 마을지원활동가, 내부실무자 등 - 형태별교육: 마을탐방·사례, 마을공동체의 이해, 마을공동체 유관정책, 보조금집행 지침 등 - 연구: 지역자원조사, 중장기 비전 연구 등
④ 협력사업	- 민관협력(자치구행정, 관계부서, 의회 등) - 대외협력(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복지관, 혁신교육사업, 자원봉사, 협치, 참여예산 등)
⑤ 행사 및 홍보, 아카이빙	- 마을박람회, 마을축제, 마을포럼개최 등 - 뉴스레터, 홍보물제작, 찾아가는 홍보 설명회 - 기록: 활동기록, 마을사업통계, 사업결과자료집제작등
⑥ 네트워크 형성	- 동별, 권역별 네트워크 - 의제별 네트워크 육아, 문화예술, 생활예술, 공간, 청년 등
⑦ 서울형 주민자치회 지원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신규구성 및 분과구성 기획총괄 - 자치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등 - 자치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관협력 촉진 - 자치구 주민활동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 모니터링 - 주민자치회, 동자치지원관 등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3.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지원

□ 마을활력소 운영 현황

- 운영 중(53) : 市 민간위탁 2, 區 자체운영 51
- 조성 중(2) : 區 조성 2(공사 중 1, 설계완료 1)
- 기 타(7) : 사업종료 3, 사업철회 2, 시설폐관 3

□ 공간 조성

- 사업내용 : 마을활력소 공사 및 설계용역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 유형별 분류 및 지원기준

유형	찾동형	거점형	마을공동체형		
			자치구형	모두의공간	
				매입형	리모델링형
특징	주민센터·자치회관 내 유휴공간 개선	區 공동체공간 활성화 지원 복합 기능공간	區 공간확보, 市 조성비 지원 → 區 주민단체 공모	주민단체의 역량이 높고, 마을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市·區가 주민과 함께 공간 조성	
조성주체	區	區	區	市 (부지매입, 조성공사)	區 (리모델링비 지원)
추진방법	區 신청접수 → 조성협의(市·區) → 사업비 교부(市·區) → 공감워크숍 → 공간운영	區 신청접수 → 조성협의(市·區) → 공감워크숍 → 사업비 교부(市·區) → 공간운영	사업비 교부(市·區) → 주민단체 모집 → 공감워크숍 → 공간운영	운영주체 공모 → 간접지원(역량강화) → 공간조성 (부지매입, 조성공사)	운영주체 공모 → 간접지원 → 사업비 교부(市·區) → 공간조성(리모델링)
예산과목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시설비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지원규모	최대 2억	최대 29.7억 (차등보조율 적용)	리모델링형(2억 내외) 신축형(16.5억 내외)	25억 내외	최대 2.5억
공간규모	주민센터 내	500㎡ 이상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운영주체	주민자치회 등	區 마을자치센터	비영리 민간단체, 주민협의체 등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민간단체 등
시설수	운영 13	운영 5, 조성중 1	운영 33, 조성중 1	중단 3	운영 2

□ 운영 지원

- 사업내용 :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성 경비, 컨설팅 등
- 지원기준

구분	사업비	인건비성 경비	공감워크숍
지원대상	개소 후 5년 내 마을활력소 (찾동·마을공동체형)	개소 2년 내 거점형 마을활력소	찾동·거점형·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지원규모	연간 최대 5백만원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반영)	2명 채용 시 시비:구비=50:50 지원 거점형 마을활력소 전담	1개소당 최대 11백만원 내외
주요내용	마을활력소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인력 인건비	1개소당 5~10회 실시

○ 기타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BI 공유 :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을활력소 현판 지원(1개소당 3백만원)
- 공간이음 : 공동체공간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 목적의 공간 누리집
- 공간유지·관리 : 일부 마을활력소의 대부료,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등 지원

※ 마을활력소 운영현황

※ '22.10.20. 기준

구분	운영형태	소재지	시설명	개관시기	비고	
운영중 (53)	市 위탁운영 (2)	강 북 구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19.12.	마을공동체형	
		마 포 구	마포 마을 활력 소	'18. 7.	마을공동체형	
	區 직영 (39)	중 구	다 산 마 루		'20.10.	찾 동 형
			성 동 구	금 호 1 가 동	'16. 1.	찾 동 형
				함 계 보 고	'17. 5.	찾 동 형
		광 진 구	고 랑 울 림	'19. 7.	찾 동 형	
		중 랑 구	상 봉 마 중	'18.11.	마을공동체형	
			겸재마중(공동체주택)	'21. 9.	마을공동체형	
			망 우 마 중	'22. 3.	거 점 형	
		성 북 구	문 화 공 간 이 육 사	'19.12.	마을공동체형	
			길 음 아 지 트	'22. 2.	마을공동체형	
			정 릉 함 등 지	'22. 9.	마을공동체형	
		노 원 구	수 락 행 복 발 전 소	'18. 5.	마을공동체형	
			도 압 어 울 마 루	'21.11.	마을공동체형	
		은 평 구	고 리 마 루	'18. 6.	찾 동 형	

구분	운영형태	소재지	시설명	개관시기	비고		
			토정골사랑방	'19. 1.	마을공동체형		
			한옥마을회관	'18. 1.	마을공동체형		
		강북구	어울향기	'19.12.	찾동형		
		도봉구	은행나루	'16. 2.	찾동형		
			학동지	'17. 7.	찾동형		
			창오량	'18.12.	마을공동체형		
		서대문구	천연옹달샘	'17. 3.	마을공동체형		
			나비울	'18. 6.	찾동형		
		양천구	용왕산숲속	'17. 2.	마을공동체형		
		구로구	천왕역버들	'17. 5.	마을공동체형		
			다벗다벗	'18.11.	마을공동체형		
			모아래	'20.11.	마을공동체형		
		동작구	대방누리마루	'18. 6.	찾동형		
			보라매등지	'18.12.	마을~공동체형		
					사이좋은	'19. 7.	마을공동체형
꽃담소	'21.11.				마을공동체형		
사랑동지	'22. 7.				마을공동체형		
금천구	독산4동			'15.12.	찾동형		
	맹골맹골			'17. 1.	찾동형		
	새재미			'17. 6.	마을공동체형		
	늘슬나루			'21. 5.	마을공동체형		
영등포구	문래목화			'18. 7.	찾동형		
강동구	성내어울터			'18.10.	마을공동체형		
	모두마루			'18. 9.	마을공동체형		
송파구	송파구거점형마을활력소			'22. 3.	거점형		
강남구	강남애(愛)그린			'22. 6.	마을공동체형		
區 위탁운영 (12)				성동구	사근동	'19. 2.	마을공동체형
				동대문구	회기한지붕	'18.12.	마을공동체형
					휘경아뜰리에	'18.11.	마을공동체형
		노원구	중계온마을센터	'22. 2.	거점형		
		도봉구	산돌	'21. 1.	마을공동체형		
			창이마을꿈터	'21. 1.	마을공동체형		
			도봉구거점형마을활력소	'22. 4.	거점형		
			초록뜰	'19. 6.	마을공동체형		
		금천구	어울샘	'18.10.	마을공동체형		

		영등포구	대림2동 주민공동이용시설	'17. 9.	마을공동체형
		강동구	천호동 거점형 마을활력소	'20. 7.	거점형
		강서구	종해문화	'22. 7.	마을공동체형
조성중 (2)	區 조성 (2)	중랑구	어울림마당	-	마을공동체형
		성북구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	거점형

※ 출처 : 행정국 제출자료

○ 본 폐지 조례안은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 등 논란이 있어온 상황에서 서울시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보다,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하여 발의된 것으로 보임.

※ 행정국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자치구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마중물 차원에서 지난 10년간 서울시에서 지원해왔으며, 그간 사업과정에서 많은 비판과 논란이 지속되어 온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으로, 폐지조례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마을공동체사업 등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 ▷ 마을공동체사업에 2021년 기준 약 3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2012년 이후 2021년 현재까지 약 10년간 2천 2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지역공동체과 예산액 기준)
-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에서는 ~중략~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마중') 등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어 '21년 연간 감사기본 계획에 따라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 서마중은 갑 연합에 근거없이 예산과 사무실 공간 및 인력을 부당 지원함으로써 약 4억 6천만 원의 특혜를 제공하는 등 **총 41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한 바 있음**(별첨 참조).

※ 출처 : '마을공동체사업 등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2022. 7. 감사담당관)

- 동 폐지조례안은 사업 초기부터 10년간 시 주도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각 자치구 여건과 수요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2019년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분석평가 자료에서도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함.

I 자치구 특성 반영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기획 지원

기존 사업 추진결과 반영한 통합 공모사업 기획 권장

- 자치구별 특성에 따라 단계별, 주제별 공모사업 구성 비율을 설정
 - 2017년부터는 자치구가 자체 사업과 서울시로부터 이관받은 사업을 바탕으로 통합 공모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해서 추진
 - 서울시는 자치구가 통합 공모사업을 기획할 때 기존 사업 추진결과를 반영해 단계별, 주제별 사업 구성 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권장
 - 사업 건수와 참여자가 적은 자치구는 모임형성 지원 단계 사업과 간접지원을 적극 추진해 저변 확대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
 - 사업 건수와 참여자가 많은 자치구는 모임형성 지원 단계에 해당하는 자체 사업보다 서울시가 주로 추진했던 활동 지원, 공간 지원 단계 사업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적절

※ 출처 : 2019 서울연구원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 반면, 서울시가 수행하던 컨트롤 타워 역할 부재로 인한 사업의 혼선과 자치구별 사업 추진역량 및 추진의지의 차이로 인한 사업 양극화 현상, 행정의 신뢰성 훼손 등의 우려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종료 반대 민원 및 고용승계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는 바,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입법예고 결과 참조

- 특히,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역량이 부족한 자치구에서는 사실상 사업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결국, 동 조례안의 폐지 여부는 자치구 주도로의 사업 재편으로 인한 사업 효과성 제고 측면과 서울시 역할 중단에 따른 사업동력 상실 우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종료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 훼손 가능성 및 고용승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조례폐지 시행일을 안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려 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와 마포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기간종료가 각각 2023년 1월 8일과 2023년 2월 13일까지 되어 있는 바, 행정 신뢰성을 위해 시행일을 민간위탁 종료 시점에 맞출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행정국은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와 마포 마을활력소의 위탁종료 기간까지의 민간위탁금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에 4천 1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폐지 시행일 이후에도 일반조례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일반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개별법률에 위임 근거 규정이 없을 때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을 위임의 직접적 근거로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을 살펴볼 때, 일반조례 역시 민간위탁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⁴⁾

※ 참고판례: 대법원 1995.7.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 출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6페이지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6명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가. 10년이나 이끌어오고, 특히 2020년 6개월이나 걸려서 어렵게 만들어진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특히 1만 명 이상의 반대서명을 받았던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론장에서 한 번의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폐지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음.

마을공동체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을 이어가는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임. 광역 시의회가 이렇게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나중에 길이길이 오세훈 시장의 흠결로 남을 것임.

나. 풀뿌리 민주주의는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며, 시민 참여의 대표적인 사업이 주민자치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생각함.

조례의 폐지가 단순히 마을사업의 종료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애는 것이어서 이러한 결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일임. 더욱이 이러한 결정을 의회가 앞장서서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개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조례안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 반대함.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박상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5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10월 17일
발 의 자: 박상혁 의원(1명)
찬 성 자: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용일, 김원중, 김지향,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영한,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옥재은,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장태용, 채수지, 최민규,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9명)

1. 제안이유

○ 동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2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었음.

○ 그러나 본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자치구 단위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마중물 차원에서 지난 10년간 서울시에서 지원을 지속하여 왔으나,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 및 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각종 비효율이 드러나고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를 통해 서울시 주도의 획일적 지원이 아닌,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